

-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별 처분근거 발췌

2018. 10.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건설도로과)

구 분	위반행위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법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밖에 필요한 사항(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1차 6개월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 미 보완시 2차 등록말소	건설업 등록부서
건설업 처분사항 통지	법제14조제2항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제99조제1호 : 과태료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50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도급계약 원칙	법제22조제2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공사기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보관하여야 한다.	법제99조제2호 : 과태료 (도급자) 1차 150만원 2차 150만원 3차 15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통보	법제22조제6항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81조제3호 : 시정명령 법제99조제3호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건설공사 직접시공	법제28조의2 제1항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는 다음 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법제82조제2항제2호 : 영업정지 6개월 도급금액의 6~24%에 해당하는 과징금	건설업 등록부서
	법제28조의2 제2항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99조제4호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15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일괄하도급 금지	법제29조제1항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제82조제2항제3호 : 영업정지 8개월 도급금액의 8~30%에 해당하는 과징금	건설업 등록부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제82조제2항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도급금액의 6~24%에 해당하는 과징금	건설업 등록부서

구 분	위반행위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동일 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법제29조제2항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승낙없이 동일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법제82조제2항제3호 : 영업정지 4개월 도급금액의 4~16%에 해당하는 과징금	건설업 등록부서
재하도급 금지	법제29조제3항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한 경우	법제82조제2항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도급금액의 6~24%에 해당하는 과징금	건설업 등록부서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 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법제82조제2항제3호 : 영업정지 4개월 도급금액의 4~16%에 해당하는 과징금	건설업 등록부서
하도급 내용 통보	법제29조제4항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자와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것을 승낙한 자가 30일 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법제99조제5호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15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자와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것을 승낙한 자가 30일 내에 발주자에게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제82조제1항제4호 : 영업정지/과징금 1차 3개월/6,000만원 2차 4개월/8,000만원 3차 4개월/8,00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하도급 관리	법제29조의2 제1항	하수급인이 법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제99조제6호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15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하도급계획 제출	법제31조의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법제99조제7호 : 과태료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법제34조제1항	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계약 체결한 건설업자)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법제99조제8호 : 과태료 (시정명령 미이행)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500만원 법제82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과징금 (건설업자 의무위반) 1차 2개월/4,000만원 2차 3개월/6,000만원 3차 3개월/6,00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구 분	위반행위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법제34조제2항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법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법제82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과징금 1차 2개월/4,000만원 2차 2개월/4,000만원 3차 2개월/4,00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산출내역서 명시	법제34조제3항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법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법제82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과징금 1차 2개월/4,000만원 2차 2개월/4,000만원 3차 2개월/4,00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선급금 지급	법제34조제4항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법제82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과징금 1차 2개월/4,000만원 2차 2개월/4,000만원 3차 2개월/4,00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하도급대금 조정	법제36조제1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율대로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법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법제82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과징금 1차 2개월/4,000만원 2차 2개월/4,000만원 3차 2개월/4,00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검사 및 인도	법제37조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하고 설계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하여야 한다.	법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법제82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과징금 1차 2개월/4,000만원 2차 2개월/4,000만원 3차 2개월/4,00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강요	법제38조제1항	수급인은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법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법제82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과징금 1차 2개월/4,000만원 2차 2개월/4,000만원 3차 2개월/4,00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계약상 이익부당제한 특약요구 금지	법제38조제2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법제81조제6호 : 시정명령 법제82조제1항제9호 : 영업정지/과징금 1차 2개월/4,000만원 2차 2개월/4,000만원 3차 2개월/4,00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구 분	위반행위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건설기술자 배치	법제40조제1항 시행령제35조 제1항,제5항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법제97조제4호 (건설기술자 현장 미 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업 등록부서 (고발)
	법제40조제2항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81조제7호 : 시정명령 법제100조제2호 : 과태료 1차 ~ 3차 30만원 시정명령 미이행시(제5, 7, 10호) 영업정지 1차 2개월 2차 3개월 3차 3개월	건설업 등록부서
건설공사표지 게시	법제42조제1항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제81조제8호 : 시정명령 법제100조제4호 :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건설업자 실태조사 등	법제4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제81조제9호 : 시정명령 법제100조제3호 :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30만원 3차 30만원 시정명령 미이행시(제5, 7, 10호제외) 영업정지/과징금 1차 2개월/4,000만원 2차 2개월/4,000만원 3차 2개월/4,00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법제68조의3 제1항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법제82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과징금 1차 2개월/4,000만원 2차 2개월/4,000만원 3차 2개월/4,00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법제9조의2제2 항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제100조제1호 :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건설업 교육 이수	법제9조의3제1 항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제99조제12호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	건설업 등록부서
국가기술자격 증(경력증) 대여	법제21조의2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법제82조제1항제2호 1차 2개월/4,000만원 2차 3개월/6,000만원 3차 3개월/6,000만원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시 등록말소	건설업 등록부서